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4. 9. 4.(수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성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4년 8월 22일
- 회부일자: 2024년 8월 26일

3. 제안 이유

-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(학령인구 포함)와 지방소멸 위기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음
- 이에 따라,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 교육은 물론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우리 사회 주요 정책들의 근간이 되고 있어, 충청북도교육청(교육지원청)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소통, 상호 지원 노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
-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충북교육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상생·발전 을 추구해 나가는 충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청북도,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한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·운영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례의 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회의 운영, 실무협의회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에 ‘학령인구 감소, 학교 통폐합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’, ‘안전한 교육환경’, ‘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·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(안 제2조제12호~제14호)
- 매년 8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했던 교육행정협의회의 정기회를 매년 상·하반기로 나누어 2회 개최 하도록 함 (안 제7조)
-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·신설함 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안이유 검토

-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¹⁾와 지역소멸 위기²⁾의 현실화 우려 속에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,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이 요구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현 기조에 따라 ‘교육특구·지역활성화를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·늘봄·학교시설 복합화·온마을 배움터 정책 등’ 지방자치단체와 연계·협업을 필요로하는 정책과 사업이 늘고 있는 추세임
-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충청북도 교육행정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

1)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: 2021년 0.81명 → 2022년 0.78명 → 2023년 0.72명

2) 소멸고위험 지역: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
소멸위험 지역: 음성, 증평, 충주, 제천
소멸주의 지역: 청주, 진천
(2024년 6월 기준 통계청 자료)

높여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협의회의 협의·조정 사항과 정기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, 시기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- 안 제2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 간 협의·조정 사항에 ‘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, 지역소멸위기 대응, 안전한 교육환경,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·협력이 필요한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’ 등 지역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신설하여, 협의회가 시대변화·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 민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
- 안 제7조에는 제2조의 개정 사항과 같이 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사항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감에 따라 현행 매년 8월 중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협의회의 정기회를 상·하반기로 나누어 2회 개최하도록 강화하여 협의회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

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(2021~2024 현재)

년도	회차	일자	비고
2021	제1차 교육행정협의회	2021. 4. 12.	2회 개최
	제2차 교육행정협의회	2021. 10. 28.	
2022	제1차 교육행정협의회	2022. 5. 26.	"
	제2차 교육행정협의회	2022. 11. 4.	
2023	제1차 교육행정협의회	2023. 4. 5.	"
	제2차 교육행정협의회	2023. 11. 10.	
2024	제1차 교육행정협의회	2024. 4. 11.	안건 발굴 및 도청과 협의 후 추진 예정
	제2차 교육행정협의회		

- 안 제10조에는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음.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앞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가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안건 관련 실무부서와의 의견조정 및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협의회 심의 안건을 채택하여 상정하는 등 협의회 개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실무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개정 사항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 사료됨.

**타 시·도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
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기준**

(2024. 8. 기준)

구분	조례명	회의 운영 횟수		실무협의회		비고
		정기회	임시회	임의	강제	
서울	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2	필요시		○	
경기	경기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	1	“		○	
인천	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	2	“	○		
강원	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1	“	○		
세종	세종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	1	“		○	
충남	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조례	1	“	○		
대전	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1	“	○		
광주	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1	“		○	
전북	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	1	“	○		
전남	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1	“		○	
대구	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1	“	○		
경북	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	1	“	○		
경남	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	1	“	○		
울산	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	1	“	○		
부산	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	2	“	○		
제주	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	1	“		○	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늘고 있어 이 같은 시대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추가하고,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 횟수 확대와 실무협의회의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협의회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협의회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, 타당성이 인정됨
- 또한, 「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비추어 볼 때,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
- 다만, 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의회 개최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실무협의회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실무협의회의 세부 구성 체계와 회의 개최, 협의회 심의 안건 선정 및 처리 방법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양 기관의 조속한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